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「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·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」

◇ 제 · 개정 이유

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고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하기 위함

◇ 주요 내용

가. 알기 쉬운 입안기준을 반영한 자구 수정(제명, 안 제1조·제2조·제8조)

나. 재검토기한 설정(안 제11조)